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622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6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조례의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이미 “위원회”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서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“위원회”로 약칭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약칭을 삭제하고, “위촉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수정함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 을 “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” 위원회 “라 한다)” 를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” 로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, 제5항, 제8항, 제9항 중 “위원회” 를 각각 “지원시설운영위원회” 로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촉해제” 를 “해촉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10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	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⑧ **위원회**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⑨ **위원회**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	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⑧ **지원시설운영위원회**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⑨ **지원시설운영위원회**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영화 상영관 운영
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
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

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원할 때
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

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(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)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. 영화 상영관 운영 2.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.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<신 설>	제10조(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지원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. 1.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지원시설 관리·운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본인이 원할 때 2. 질병,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

	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제9조(협력체제 구축) (생략)	제11조(협력체제 구축) (현행 제9조와 같음)
제10조(사무의 위탁) (생략)	제12조(사무의 위탁) (현행 제10조와 같음)
제11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13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1조와 같음)